KINU 통일포럼 16-03

KINU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KINU 통일포럼 16-03

KINU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인 쇄 2016년 11월
발 행 2016년 1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2023-8000 (직통) 2023-8040 (팩시밀리) 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알래스카인디고 (02-2277-5553)

ⓒ 통일연구원, 2016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

제14차 KINU 통일포럼

Ⅰ. 서 론 ····· 1

Ⅱ.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및 제도적 장치 ····· 3

1.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쟁점 ····· 3
   - 가.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 3
   - 나.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의 주요 쟁점 ····· 5
2. 북한인권재단 ····· 9
   - 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근거 및 목적 ····· 9
   - 나. 북한인권재단 재원 및 구성 ····· 11
   - 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관련 세부사항 ····· 13
3.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16
   - 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근거 및 목적 ····· 17
   - 나. 수집·기록 및 보존·관리의 구체적 절차 ····· 18
   - 다.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관련 세부사항 ····· 21
4.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26
   - 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 26
   - 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28
   - 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협력대사 관련 세부사항 ····· 28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Ⅲ.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주요 과제와 정책 추진 방향 ····· 30

1. 향후 주요 과제 ····· 30
   가. 북한 내 인권역량 형성 지원 ····· 30
   나. 체계적인 북한인권실태 조사시스템 구축 ····· 32
   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 절차 마련 ···· 35
   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 37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39
   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및 기준 ····· 40
   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과 과제 ····· 43

Ⅳ. 결론 ····· 49

부록1. 북한인권법 ····· 53

부록2. 북한인권법 시행령 ····· 60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발 간 사

본 보고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14차 KINU 통일포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KINU 통일포럼은 통일연구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동 포럼은 통일연구원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계, 정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기반을 의미합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실행을 계기로 한국사회 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이 사실이며, 통일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북한인권법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 각 부처 간, 정부와 시민사회 간 긴밀한 협력구도의 창출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14차 KINU 통일포럼에서 논의했던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은 향후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KINU 통일포럼에 참여해 주신 각 분야 전문가들과 본 보고서가 출간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1월

통일연구원장

최 진 욱

요 약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9월 4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처음 발의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정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제도적 장치로는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있다. 또한,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이 주요 정책적 방안이다. 북한인권법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인권법 관련하여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를 적절히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인권법 관련 논의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내 인권역량 형성 지원, 북한인권의 구체적 실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북한인권 조사시스템 구축이 요청된다. 또한, 북한 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 증진,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균형 있게 추진되고, 그 결과 북한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한 통일시대의 비전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인권법,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정책, 행복한 통일시대

I. 서 론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9월 4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3월 법제정이 처음 발의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노력이 부각되고 있고, 또한 각계각층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과 더불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대북제재 국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법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 문제는 향후의 관계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북한인권법 관련한 국내 논의에서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논의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의 연계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전개되는 북한인권 개선논의가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인권 개선논의의 구체화와 북한인권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합할 때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에 대한 전반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인권법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향후 전개될 북한인권법의 구체적 시행 과정에서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 대북·통일정책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에서 인권의 가치가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통일한국과 통일 이후 통합방안을 고려함에 있어 통일과 인권의 가치는 함께 융합되고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확산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계기로 통일한국을 염두에 둔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전반적 권리의 증진, 나아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2]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Ⅱ장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북한인권법의 핵심 제도적 장치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파악한다. Ⅲ장에서는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주요과제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북한인권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북한인권정책, 통일 및 인권의 가치 조화와 관련하여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37~51 참조.

[2] 이러한 관점에서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의 의미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된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은 단순히 북한인권 문제 해결 혹은 북한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통일 이후 통합까지 염두에 둔 개괄적 구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자세한 분석은 한동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4호 (2014년 겨울), pp. 138~140 참조.

Ⅱ.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및 제도적 장치

1.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쟁점

가.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

한국 사회 내 북한인권법 논쟁은 2016년 3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11년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이다. 북한인권법 통과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의 일단락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야기한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을 우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세부 내용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향후 주요 논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3]

여야 간 최소한의 합의 속에 탄생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안의 목적,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등 각종 제도적 장치,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 등 정책방안,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등 법안의 기본원칙부터 실질적 운영을 위한 주요 기제 등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의 기본목표로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 및 생존권적 기본권 개선의 균형적 도모를 추구한다.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과 생존권을 추구함으

[3] 본 장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08, 2016.3.4.)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증보(增補) 및 개편(改編)한 것임을 밝혀둔다.

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제2조).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제5조),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제6조). 또한,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제7조). 인도적 지원과 관련, 국제적 인도(引渡) 기준에 따른 투명한 추진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이 명시되었다(제8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북한인권재단 관련,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재단의 운영, 재단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마지막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 관련,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고 규정하였고, “수집·기록된 자료는 매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하였다(제13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인권법은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었다는 자체만으로 북한주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법의 기본목적이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향후 제도적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보다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 등 시민사회 간의 합의와 조정 그리고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합의, 조정, 협력의 과정에서 결국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승화시킬 수 있는 협상력,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력,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또한 요구된다. 결국, 북한인권법 주요 내용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제기된 논쟁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이 앞으로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의 주요 쟁점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을 간략히 보면 우선 2005년 8월 11일 제17대 국회에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그 이후, 제17대 국회에서 3건, 제18대 국회에서 5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들 법안은 여야의 논쟁 속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11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2005년 이래,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지체되는 사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논의는 급진전을 이루었다. 2013년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의 보고서 발간과 그 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한인권 의제 논의,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 규탄결의 채택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이 강화되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동향이 질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6년 2월,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는 11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 여야 의견을 조율한 후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대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6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2006년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의 당사자로 여겨지는 한국 또한 국내외적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4]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10년 이상 지속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인권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의 부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0여 년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북한인권' 문제의 범위와 본질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은 크게 자유권 중심 관점과 사회권 중심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시각은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러한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사안의 '즉시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하여 사회권 중심 관점의 경우, 북한 당국에 대한 직접적

[4] 2004년 법안의 정식명칭은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고, 2006년 법안의 정식명칭은 「납치문제와 그 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 침해 대처에 관한 법률(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の對處に關する法律)」이다.

비판보다는 북한인권 침해실태에 대한 역사적·구조적·근본적 원인에 주목하여 중장기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강조한다. 또한, 즉각적 중단이 필요한 침해실태보다는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등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의무로서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당국의 책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실태보다는 북한정치 및 사회 전반의 '체질개선'을 유도하는 기술협력, 인권대화, 역량강화 등의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다.[5]

북한인권 문제 및 개선방식에 대한 이러한 입장의 차이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북한인권 개선논의의 과도한 정치화 및 이분법적 분절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목적으로 제시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북한인권 증진)'은 여야의 첨예한 논쟁과 대립을 포괄하고 있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2) 북한인권법 실효성 논쟁

북한인권법 제정 자체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과 관련이 있다. 북한인권 침해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는 관점에서는 법안 제정을 통해 정부 북한인권정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추구하는

[5]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북한인권 개선 논의구도에 대한 설명으로 한동호,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79~80 참조.

관점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오히려 여러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야당의 경우 북한인권 침해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북한인권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자 대안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북한 민생인권법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 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조항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실효성 관련 논쟁은 법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법과 정책의 연계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조항별로 법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북한인권법과 남북관계 개선의 연계

북한인권법 제2조 ②는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회의적 의견 중 다수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남북관계 개선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사회 내 북한인권 문제 자체의 논의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 가능한 한 연계되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안이 지향하는 기본정신이라는 점이 강조됨으로써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 북한인권 이슈의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물론, 북한인권 증진 노력이 필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의 선순환적 연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고 여겨진다.

2.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법에서는 정부업무체계, 북한인권 개선기구 및 주요 정책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인권 개선기구로서는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이 있고 주요 정책수단은 대북압박, 국제공조, 인도적 지원, 시민단체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촉진 등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기구나 정책수단들을 통해 실효적인 북한인권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향후 정부, 국책연구기관, 언론 및 시민단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이하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기구 중 북한인권재단과 관련된 법과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위한 방안을 고찰해본다.

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근거 및 목적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의 설립과 재단의 법적 성격, 그리고 설립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은 재단의 정관이며 이는 2016년 9월 2일 대통령령 제27476호로 제정,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재단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재단 사무에 관한 사항,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재단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감독관청인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단이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인권법 제10조 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동조 동항 제1호에서는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

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나. 북한인권재단 재원 및 구성

북한인권법 제11조에 따르면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재단이 출연금을 교부 받으려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재단이 기탁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고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업실적을 기탁자가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12조에서는 재단 임원의 구성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재단 이사장 선출과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밖에 시행령 제13조 1항과 2항에서 재단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임기 3년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고 정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서는 재단 임원의 자격에 대해 북한인권 증진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자격으로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국제기구에서 북한인권 증진 관련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북한인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재단의 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은 재단 정관에 근거하여 직제규정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에는 업무 구분에 따라 기획운영부(사무국), 조사연구부, 교육개발부, 대외협력부 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획운영부(사무국)는 재단운영, 기획총괄, 조직관리, 예산, 실태조사, 정책과제 용역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연구부는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조사연구부는 업무 성격

에 따라 북한인권팀(혹은 과(課))와 인도적 지원팀(혹은 과(課))로 나누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개발부의 경우는 북한인권 교육, 북한인권 교재 개발, 그리고 북한인권 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맡고, 대외협력부(사업부)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민간협력사업 추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부금 사업기획, 기부금 모금 및 운영,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이외에 부속실과 감사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관련 세부사항

(1) 시민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1인 북한인권단체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시민단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무리하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내려는 행태를 보일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단체 및 인도적 지원 단체들에 대한 객관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은 해당 시민단체의 재정, 참여인원, 사업실적, 국내외 지명도 및 공신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원 형태는 주로 매칭펀드 형식을 취하되 100% 재정지원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재단은 북한인권단체 및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하며 그 방안으로는 매칭펀드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나 교육·훈련 기회 제공 및 북한인권단체로서의 공인인증서 발급 등이 있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통일연구원 등은 북

한인권단체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상호 정보 교환을 함으로써 북한인권단체 및 인도적 지원 단체들의 자발적인 연대체 구성을 지원하거나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부장관도 필요 시 간담회나 비공식모임 등을 통해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을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제3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을 보호하는 단체를 재단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3국에 있는 탈북민 신분의 법적문제와 해당국과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 또한 국내의 찬반의견 등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2)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임산부 또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시 하여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법 제10조 3항 2호에서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인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펼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북한인권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과 시행령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적 근거, 지원 시 투명성 확보 노력, 인도적 지원의 정의 등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재단은 대북 인도적 지원 수요 조사·연구와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담당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의 구체적 실행은 여전히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인도적 지원의 실질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다만 재단의 사업인 인도적 지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실시 및 확대 등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인도적 지원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3) 남북인권대화 추진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 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남북인권대화를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탈북자 문제, 정치범 수용소, 기타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 등으로 대화 주제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해결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인도적 문제인 동시에 인권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인권논의를 위한 환경을 단기적으로 형성하기가 어렵다면,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인권협의체들과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느슨한 형태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인권대화 주제를 북한이 '특정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시작한다면 인권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준을 근거로 보완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북한에게 인식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6]

(4) 국제협력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으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역할만 명시하였으나 좀 더 폭넓고 실질적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에는 정부부처, 국내외 민간단체, 유엔 및 국제기구,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는 개별국가 등이 모두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과 역할을 조정을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북한인권재단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 구축은 북한인권 개선 전략 수립에 있어서 정부는 물론 국내외 인권단체, 관련국 및 국내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7]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이 법의 주요 정책수단이자 제도적 틀인 북한인권재단의 역할 및 업무 분장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재단 출범 전후과정에서 철저한 준비, 유관부처 간의 협의 및 입장 조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장 적절한 정부업무 체계 효율화 및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여 법무부에서 북한인권 기록 관련

[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pp. 62~63.
[7] 위의 책, pp. 60~61.

자료를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기록보존소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억제 및 경고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통일 이후 전환기 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인권침해기록과 보존의 중요성은 분단 시기 중요한 역사의 정리뿐 아니라, 통일 후 핵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등에 대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 전환기 정의 구현을 통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작업 중 하나이다. 때문에 인권 침해 기록과 조사는 무엇보다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와 보안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북한인권 기록과 관련한 현행법의 내용 및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기록과 보존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근거 및 목적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기록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이다. 북한인권법 제13조 제1항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

을 담당한다. 한편, 동법 제13조 제5항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매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고 정하고 있다. 즉,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고,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동법의 규정만으로는 양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분명치 않은 점이 있는 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양자의 권한관계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나. 수집·기록 및 보존·관리의 구체적 절차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016년 4월 29일부터 2016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조문의 문구와 체제만 일부 수정·변경되어 2016년 9월 2일 대통령령 제27476호로 제정,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록 수집 절차와 방법, 이후 법무부의 기록보존소로의 이관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1)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4조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북한주민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관계인의 진술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한 문답서(問答書) 형식으로 기록하며,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해당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답서나 자필 진술서의 형식은 궁극적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증거조사의 일부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동조 제2항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하는 경우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진술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북한인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의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자료의 원본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동조 제4항은 통일부 기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시행령 제16조는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또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13조 제6항은 기록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기록센터의 운영 및 기록의 이관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 시행규칙(시행 2016년 9월 4일, 통일부령 제88호, 2016년 9월 2일 제정)을 마련,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관계인 진술의 수집·기록 방법을 위한 문답서 서식, 영상녹화동의서 서식, 물건 등의 수집·기록 방법과 관련된 서식 등을 마련했다.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은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관리 담당기구의 명칭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기 위해 필요한 업무와 이관 받은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업무, 그리고 그 밖의 이관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는 기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2016년 6월 17일 공고된 규칙 제정(안)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의 결격사유(제3조), 자료 수집·기록 현황 통보(제5조), 자료의 이관(제6조)에 관한 세부사항과 자료의 보존·관리기간(제7조), 자료의 보존관리(제8조)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문서와 영상녹화자료, 물건 등 자료별 수집·기록 목록 및 이관 목록 서식 등 7개 서식을 마련

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장은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4월, 7월, 10월 10일까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에게 전분기에 수집·기록한 자료 및 이관할 자료의 현황을 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자료의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관리(제4조)해야 할 책임을 진다.

다.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관련 세부사항

(1) 효율적 기록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조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법무부에 북한인권 기록 보존·관리기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이론상 양 기구 간의 관계 설정방안으로서 첫째, 통일부와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동운영방안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실질적 조사(사법적 수사) 기능을 수행하고, 법무부는 보존기능만 수행하는 방안, 둘째, 통일부는 행정조사에 국한하고, 형사고발을 하며 이에 따라 검찰이 법무부의 지휘 아래 실질적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법무부는 보존 관리를 담당하는 방안, 셋째,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운영하고,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세 가지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채택된 시행령은 세 번째 방안을 따르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의 경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 침해 정보를 수집하여 나름의 원칙에 따라 분류·기록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비해, 법무부는 이관된 북한인권기록을 검증하고 필요 시 조사 내지 수사를 진행하여 기록·보존 및 관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행정조사를 수행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사법조사를 수행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사항의 기록과 보존에 관해 통일부와 법무부 부처 간 외형상 업무 중복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양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의 성격 및 목적에 차이가 있다. 한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공무원은 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필 자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문답서 끝에는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권 침해 사례의 증거조사의 일부 역할을 통일부가 담당하게 됨을 의미한다. 해당 자료는 사법조사의 과정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양 부처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

(2) 북한인권재단 업무와의 중복업무 처리

북한인권법 제6조는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10조에서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재단의 업무에는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별

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인권재단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 업무는 조사의 대상을 "북한인권 실태"와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구분한 것인지 아니면 급하게 절충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도 없이 규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인권"과 "북한주민의 인권"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구분할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법 제정 과정에서 정확한 문구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인권"과 "북한주민의 인권"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인권재단의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의 중복업무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의 경우 전반적인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후자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침해사례를 위주로 기록을 하는 것으로, 사전에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단의 업무를 통한 조사 자료는 이후 법무부로 이관되어 기록·보존되는 자료와는 증명력 부분에 있어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중복업무라면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기록만 법무부에서 보존·관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문제점 해결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북한인권 기록 보존 자료의 활용

북한인권 기록 보존의 최종 목적은 북한인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려고 한 것은 서독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와 같은 기능의 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전환기 정의 실현의 과정에서 과거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의 사법적 청산과정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실제 역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탈북자 등을 상대로 한 인권실태 조사 자료가 통일 이후 북한 내 체제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 자료로 활용되는 것에는 일정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 사실이 북한에 알려짐으로써 현재 북한에서 일반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할 소지가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인권실태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필요 시 각종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보존·관리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대한 적합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 자료가 이후 수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행 북한인권법과 시행령을 기초로 효율적인 북한인권기록 작성 및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인권침해기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일부와 법무부가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행정조사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수사자료

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록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관련 증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무부는 통일부로부터 이관 받은 기록을 보존하고 유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을 다시 분류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고, 가해자를 최대한 특정하여 구체적인 죄명과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 그리고 공소시효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이 가능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한 뒤에 수사기록으로 보존을 해야 한다. 또한 기록·보존된 자료의 증거 입증과 관련한 선례와 국제판례 등을 연구함으로써, 기록·보존된 자료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기록보존소 모두 북한인권 침해기록을 위해 국내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조사뿐 아니라, 시민단체로부터 확보된 자료, 해외 연구기관이나 언론보도 자료, 국내에 입수된 북한 내에서 생산된 자료 등을 적극 수집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연구원이 1996년부터 작성해 온 『북한인권백서』를 포함, 기타 북한인권백서 자료의 활용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인권법의 궁극적 목적인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내 유관단체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업무 체계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 수행과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가와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북한인권법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기록센터 및 기록보존소의 자료는 전환기 정의를 구현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진실규명과 화해, 그리고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 기구는 자료 수집과 보존에 있어 객관성과 증명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1)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목적 및 구성

북한인권법 제5조에서 통일부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동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국제기구에서 북한인권 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

어있다. 또한 동조 제4항에서는 위원 해촉 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위원을 해촉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원장과의 협의 하에 지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을 임명하여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업무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2)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역할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에는 위원회의 임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6조에서 위원회가 자문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그리고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과 같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1)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자격과 임명

북한인권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고 정했다. 시행령 제8조에서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국제적 협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 자격에 대해 말하고 있다.

(2)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역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정하고 있다.

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및 북한인권협력대사 관련 세부사항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다른 자문위원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 2~4회 개최하여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

련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회의 구성은 북한인권 소위원회와 인도적 지원 소위원회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전원 위원회는 2회, 그 가운데 소위원회를 각 1회 개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유엔인권최고대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주요 국제인권기구 담당자와의 채널을 유지하고 국제협력 및 정보 교환을 수시로 진행한다. 또한 유엔 총회/인권이사회 참석 및 국제적 공감대 형성 노력, 주요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 및 격려, 국내외 북한인권단체 및 해외동포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각 국 정부 관리, 국회의원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주요 과제와 정책 추진 방향

1. 향후 주요 과제

가. 북한 내 인권역량 형성 지원

북한인권법의 제정에 따라 국내적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북한 지역에 대해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이 법은 북한인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다양한 제도와 절차의 지향점은 북한인권 개선의 주체인 북한 당국과 북한주민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먼저 북한 당국의 정책 및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 형성된 북한인권의 공론화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북한인권법의 제정 확산, 납치 및 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의 대북인권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문제의 국제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국제인권단체와의 대화 및 협력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자신들의 인권 개선 노력을 부각시키려 하는 것은 그 동안 국제사회가 취해 온 강경하고도 일관된 접근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 분야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과 인권대화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 시스템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협력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과 개별적으로 기술협력을 시행하는 EU, 개별국가 등과의 협의채널 마련, 국제기구의 기술협력사업 지원 기금 조성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 간 인권 분야 기술협력이 전개될 것에 대비하여 기술협력 가능 분야 선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남북인권대화의 경우, 대표 임명, 대표에 대한 지원,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면 되나, 대화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룰 것인지, 대화는 어떠한 형식으로 할 것인지(북한-EU 방식처럼 정치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방식, 중국-EU 방식처럼 인권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 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인권대화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인권 관련 문서들(북한의 인권 관련 법령, 세계인권선언과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등)의 주요 내용, 최근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한 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증대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이러한 콘텐츠를 북한에 유입 및 확산시키는 수단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6년 북한 정보유입 촉진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러한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층별·세대별로 특화된 인권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주민들의 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이 현 시점에서 절실히 갈구하는 특정한 인권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권고한 바와 같이 인적 대화 및 교류 기회를 촉진하는 것이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 접촉의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인권 개선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 체계적인 북한인권실태 조사시스템 구축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고 있다. 북한인권실태 조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항목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조사범위의 경우, 북한인권법 제3조에서는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엄밀하게는 조사범위가 북한 영역 내에서의 인권 관련 정보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2항에서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사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실질적인 증거 축적의 측면, 다른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사안 발굴의 측면 등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조사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영역 내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자행한 납치와 같이 북한 당국의 관할권 밖에서 벌어진 침해도 포함하였으며, 북한 내의 인권 침해를 인과적으로 가능케 했거나 그 직접적인 결과물인 다른 인권 침해 사례도 검토하였다.

조사방법의 경우, 북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탈북 이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새로운 정보습득에 따른 의식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입국 직후의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

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중 접경지역 등에 체류 중인 북한주민, 방북 외국인, 납북되었다가 석방된 외국인 등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 정부 부처가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관련국 정부와의 사전협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증언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차검증을 통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조사범위에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및 인권 증진과 관련되는 각종 정보가 포함되므로 인권과 관련된 북한 법령, 인민보안부 포고문, 판결문 등 북한 당국의 공식 문건, 조선인권연구협회 등이 발간한 보고서, 북한 학자들이 집필한 단행본과 논문 등도 최대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서들은 북한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북한인권실태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사항목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먼저 그 동안 국내외의 여러 주체들이 조사해온 사항들을 파악 및 분석한 후,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사항목은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파악, 인권 침해 가해자 책임규명 관련 증거 수집, 인권 침해의 원인 규명, 북한주민의 인권 의식 파악,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 등의 목적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집된 사례들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를 위한 기준과 입증정

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경우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국제인도법,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에 의거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였으며, 입증정도로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 기준을 채택하였다.

북한인권 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조사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대상자가 남북 간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탈북자라는 점과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자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면접기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조사 내용 및 방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상당수의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전담조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탈북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조사의 경우에는 가족, 조력인 등이 동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 절차 마련

북한인권법에서는 인도적 지원 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 기준에 따른 투명한 추진과 취약계층 우선지원 준수 노력을 규정하는 한편,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그 동안 국내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도적 지원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해 온 경향이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대북지원 문제가 지니는 민감성을 희석시키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 대다수가 상시적으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 그런데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계되는 구조를 띨 수밖에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 우리의 실행이 관련 국제적 원칙 및 논의와 유리된 채 전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인도적 지원이라 칭하면서도 유엔 총회 결의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인류애, 중립, 공평, 독립과 같은 인도적 지원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는 않아 왔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다면 먼저 인도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결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위기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역, 지원 규모와 품목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분배 과정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 체계도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을 통해 추구하는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 또한 이러한 과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 정신의 구현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특히 식량권, 건강권 등 사회권 실현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식량권과 건강권에 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에서 사회권규약 당사국들은 "비상 시에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할 공동의 그리고 개별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에 대한 우선권은 가장 취약한 주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특히 강조되었는데, 조사위원회는 북한에 대해서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하여 정치적 또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식량 지원이나 여타 인도적 지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인도적 지원은 비차별원칙을 포함한 인도주의 및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 보존·관리 담당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부처 간 업무 중복과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처들을 비롯하여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관

계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법이 남북인권대화 등을 예정하고 있는 점, 최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매우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전문성 제고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인원을 보강하는 등 조직을 확충하고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역량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당시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반북단체의 활동을 양산함으로써 한반도를 긴장시켜 북한정권의 주민통제 및 체계결속을 강화하는 반인권적 결과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가 지니는 민감성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있어서 민간단체들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분야의 사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북한인권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보

교환과 단체들의 역량 결집을 위하여 북한인권단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북한인권법 제정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 그 자체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지만,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북한인권 개선이 통일 전 통일 기반 조성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사 및 학생, 공무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교재 및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방안, 대학생·대학원생 북한인권 논문경시대회 개최, 북한인권 동아리 지원 등 대학 내 북한인권 논의를 활성화하는 방안, 북한인권 관련 저술활동과 연구를 지원하는 방안, 북한인권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는 방안, 북한인권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세부적 내용과 의의, 향후 주요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법률적·정책적 판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이어서 이런 관점에서 북한인권법의 실제적 운용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구체적 과제와 목표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및 기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인권이사회/총회/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에 근거하여 볼 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인식과 평가는 다음의 세 가지 판단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① 북한의 인권 침해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국제형사법에 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② 북한인권법의 행사는 “인권 우선 전략(Rights up front)”의 기조 아래 피해자 중심으로 이뤄져야하며, 진실의 발견, 법적 책임의 처리, 피해자의 구제 등이 북한인권법의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
③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보호책임에 근거하여 국제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다.

(1) 책임성 규명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인도에 반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개인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또 북한 체제 자체에 내재된 범죄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한편,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

해는 우발적인 것이라는 시각을 부인하며, 국가정책(state policy)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라고 지적한다. 즉, 북한의 인권 침해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 및 사법부, 조선노동당 등 공적 임무종사자들과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며, 따라서 국제범죄의 관점에서 조속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자 확정과 신원 공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특정화·구체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타국의 입국 금지 및 국제적 차원의 영장 발부, 나아가 보편주의에 근거한 제재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일회적인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은 아니며, 제재를 위한 보편적인 차원의 규범적 기반을 마련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과 같이, 국제관습법상 인도에 반한 죄는 전쟁범죄, 평화에 대한 죄와 더불어 모든 국가들이 국내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도에 반한 죄와 관련한 국내형사 관할권 행사 원칙은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행위와 외국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2) 피해자 중심

북한인권에 대한 지금까지 유엔의 모든 권고와 결의들은 식량권·종교와 신념의 자유·표현과 결사의 자유·이동의 자유 등 북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 주민들의 총체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개별 권리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적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북한 당국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피

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위해, 유엔 인권체제를 비롯하여 정부 간·비정부 간 채널을 통해 개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침해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피해자 구제 요구의 정당성을 계속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확인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공지의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아동,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들 내의 피수감자들, 장애인, 노인 등 권리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개별적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별적 권리들과 권리 약자 계층에 집중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모든 대북정책도 인권우선전략에 기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무부는 북한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일부는 남북인권대화의 촉진을, 국방부는 북한주민의 생명과 인권보호 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보호 강화 등 기능으로 분담하여 활동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반적 인권보호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교정과 함께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정상화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는 북한의 국가유지정책·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면에 내재되어 있는 비인권적 특성이 총체적으로 발현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북한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북한의 신분제 및 계급제적 통치방식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던 이산가족 문제 역시 시혜적이고 간헐적인 상봉으로 그치는 이벤트적 성격을 탈피해야 한다. 이산가족 문제는 한반도 주민 전체에 대한 중대하고 가혹한 인권 침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정책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인도적 지원 역시, COI 보고서의 권고와 같이, 인권적 측면에서 투명성과 함께 비차별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과 과제

앞 절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항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서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목표들의 달성 정도에 따라 북한인권법 및 북한인권정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안보리 핵심국가들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해결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기타 주요 국가들이 북한인권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안보·평화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하는 한편,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토의하고 실행방안의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가능한 사법적 해결방안 및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도출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유엔 산하 전체기구들의 역량을 집중시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는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에 근거하여 연대책임의 관점에서 함께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인권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 그리고 북한 내 극심한 인권 침해는 중국의 이익에도 상반된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폭력과 테러 행위들을 수반하는 비인도적 참사가 확산된다면 결국 전 인류의 미래와 이익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을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정치범 수용소들과 구금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이 시설들을 처리하는 것
② 인도에 반한 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상황전개에 맞도록 처리하는 것

③ 식량의 전달 및 배급 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계 수단인 시장활동을 보호하는 것
④ 외국인 피랍자 구출 및 외국인 보호
⑤ 난민관리 문제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⑥ 난민 및 전체적 상황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점검

(2) 지속적 대화와 모니터링

최근의 일정한 가시적인 변화는 북한 당국이 적어도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한 외부 노출과 교섭을 시작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고지도자를 포함하여 최고위층에 대한 책임의 추궁은 북한 당국의 일정한 반응을 필수적으로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구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속적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유엔 COI 보고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면서 인권 개선에 필요한 구체적인 장단기 요구사항들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는 따라서 보고서의 권고들을 3~5개 분야로 압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 당국이 권고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확인과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3)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와의 협력

유엔총회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기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한 바 있다.

① 북한 인권상황을 감시(monitor)하고 기록(documentation)하는 업무를 강화하고,
② 책임추궁을 확보(ensure accountability)하며,
③ 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증강하고,
④ 관련 국가들, 시민사회,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관여와 능력배양을 고양하고,
⑤ 지속적인 의사소통, 인권옹호 활동과 외부활동 주도 업무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존재감을 유지.

동시에 유엔은 현장사무소의 독립성, 충분한 자원, 보복이나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담보하도록 회원국들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무를 띠고 있는 현장사무소는 적극적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사무소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 기능을 넘어서,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와 범죄 추궁을 돕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의 4가지 기능(각 항목의 두문자를 따서 D.A.R.I. 라고 불리는)을 포함하고 있다.

① 억지와 예방(Deterrence)
② 책임추궁(Accountability)

③ 피해구제(Remedy)
④ 인권전략이행(Implementation)

따라서 현장사무소는 최소단위로서 기록 보존과 책임 추궁 및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준비기관이 되어야 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인권우선전략"의 이행기관이 되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현장사무소의 기록 보존 역시 단순한 서면의 축적이 아니라 '인권우선전략' 이행을 위한 조직적 기반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사무소는 미래 과도기의 정의실현을 준비하고 이행하기 위한 기관이어야 하며, 동시에 유엔의 인권전략을 국내적으로 지원하고 이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국제사회는 현장사무소의 존재감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제재를 포함하여 더 넓고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 권고, 이행할 수 있는 확대된 기관과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4) 북한인권법 운용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 역시 북한 관련 입법에 있어서 인권우선전략을 채용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향후의 업무진행은 앞에서 제시한 바 있는 다양한 법률정책적 요구와 고려를 충족시켜야 한다.

즉, 단순하게 증거를 모으고 및 기록을 보존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① 북한인권 책임자 처벌의 근거와 방법을 찾고, ② 유엔 현장 조직을 포함한 북한인권과 인도지원 개선을 위한 국제사

회와의 인적·물적·기술적 협력의 근거를 찾으며, ③ 북한인권과 인도지원 개선을 위한 국제·지역·국가별 기관들과의 협력의 내용 및 근거를 확립하고, ④ 북한인권과 인도지원 개선을 위한 국제·지역·국내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근거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운용을 국제공조의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기록 보존과 처벌의 근거를 확보하고,
② 책임을 추궁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전문가 그룹을 결성하며,
③ 섭외 기능을 갖추어 유엔의 인권전략에 호응하고 북한인권 개선방안의 전향적인 이행을 꾀하며,
④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도우며,
⑤ 인도적 지원을 포괄하여 대북관계에 있어서 인권적 고려에 기초한 의견개진 및 의사결정의 조정기능을 갖추고,
⑥ 특히 COI 보고서에서 권고한 바처럼 6자회담 당사국들 및 북한과 관계있는 여러 국가들, 그리고 주요 혹은 잠재적 지원국들로 구성되는 "인권접촉그룹(human rights contact group)"을 결성하는 사업의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Ⅳ. 결론

북한인권법 통과는 한국 사회 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논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향후 논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의 무조건적 일치를 요청하는 획일성이 아니라, 의견 및 견해의 다양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일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초당적 합의,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관심이 요청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인권법 제정과 이후의 실행 과정은 한국의 북한인권정책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야기한 다양한 논의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상이한 입장 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동적 운영 방안의 확립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내 인권역량 지원과 같은 보다 직접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인권 심층면접을 통한 체계적 북한인권실태 조사시스템 구축 등 국내역량 강화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논의를 종합하고 선별하되 특히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 시행 과정에서 한국의 북한인권 정책 나아가 대북·통일정책과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남북인권대화의 필요성 및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

도적 지원의 필요성 제기는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한국 실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한국사회 각계각층의 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며 이에 보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통일정책 수립 및 실행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북한인권 증진,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균형 있게 추진되고, 그 결과 북한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한 통일시대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결실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통일연구원.『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한동호.『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2. 논문

한동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4호. 2014년 겨울.

3. 기타자료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6-08, 2016.3.4.

부록 1. 북한인권법

[시행 2016.9.4.] [법률 제14070호, 2016.3.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국회 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2.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5.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4070호, 201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록 2. 북한인권법 시행령

[시행 2016.9.4.] [대통령령 제27476호, 2016.9.2.,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북한인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국제기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회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을 추천한 국회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평가
2.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3.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의 세부과제와 추진방법
4.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5.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6. 북한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도적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1. 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절차 또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국제적 협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2.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재단의 정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재단 사무에 관한 사항
5.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절차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단 내부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단의 조직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 교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재단의 지도·감독)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재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은 반기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가 본인의 성명 및 기탁금의 사용용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재단 감사의 임명 등) ① 재단에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임원(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북한인권증진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통일부장관은 국회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임원이 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임원을 해임(解任)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재단의 임원을 해임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센터의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 수집 목적으로 관계인의 진술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문답서(問答書)에 기록하여야 하며,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해당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진술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의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자료의 원본을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이하 “이관자료”라 한다)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업무
3. 그 밖에 이관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 업무

2. 법무부장관: 이관자료의 보존·관리 업무

부칙 <제27476호, 2016.9.2.>

이 영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보고서는 제14차 KINU 통일포럼(2016.5.26.) 결과를 바탕으로 한동호 연구위원, 이상신 기획부장, 도경옥 부연구위원, 임예준 부연구위원, 민태은 부연구위원, 이우태 부연구위원이 수정·보완 작업에 참여하였다.

제14차 KINU 통일포럼은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제1회의), 이정훈 대한민국 인권대사(제2회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도경옥 부연구위원, 김헌준(고려대학교 교수), 홍성필(연세대학교 교수), 제성호(중앙대학교 교수),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남북교류협력소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이수영(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김종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이원웅(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이정진(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덕행(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김태훈(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2014.6)

2014-02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2014.8)

2014-03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2014.9)

2014-04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2014.9)

2014-05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2015.1)

2014-06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2015.1)

2015-01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2015.6)

2015-02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전략과 준비방향(대외비)

2015-0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2015.12)

2015-04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2015.12)

2015-05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2015.12)

2016-01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2016.4)

2016-02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2016.8)

2016-03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2016.1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 원, 일반회원 10만 원, 기관회원 20만 원

3. 회원 특전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